

# 축산업계

소식

## 농림수산부 장관에 김양배(金良培) 전 청와대 행정수석을 임명



△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

## 농진청장에 김광희(金光熙) 전 농림 수산 제1차관보를 임명



△ 김광희 농진청장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축산법 시행 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25호, 제14,026호에 의거 농어촌특별조치법 및 축산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지난 14일 공포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6조 제1항중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표2에서 정하는 규모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1가구당 1인에 한하여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를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동조제3호 내지 제6조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종전의 제2호)중 “농어민이”를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로 하며, 동조제4호(종전의 제3호)중 “농어가”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로, “3천 300제곱미터이하”를 “3천300제곱미터(진홍지역밖의 농지는 7천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조제6호(종전의 제5호)중 “농어가·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로, 동조에 제7호 신설한다.

2.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 300제곱미터(진홍지역밖 농지는 7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7.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7천제곱미터이하의 농수산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 2) 축산법시행령증 개정령

### 제25조(권한의 위임)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의 수출·입 추천에 관한 권한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2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대한 수출·입 추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1993. 12. 14)

**표2. 초과사육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15조제 2 항 관련)**

가축의 종류	산정방법	산정기준	비고
종 계	(전년도의 종계육성계 평균생산비—전년도의 종계병아리 평균가격)×초과사육수수	감축명령으로 정하여진 최고한도를 초과한 전사육수수를	각 평균가격 및 평균생산비는 축산업협동조합
산란계	(전년도의 산란계육성계 평균생산비—전년도의 산란계병아리 평균가격)×초과사육수수	각각 종계육성계, 산란계육성계로 보아 산정한다.	중앙회가 조사한 가격을 적용한다.
육 계	(전년도의 육계(1.8kg기준)평균가격—전년도의 육계병아리 평균가격)×초과사육수수	감축명령으로 정하여진 최고한도를 초과한 전사육수수를 1.8kg 짜리 육계로 보아 산정한다.	

주 : 육성계라 함은 종계 또는 산란계중 첫 달걀을 낳기 직전까지 사육된 닭을 말한다.

## 종계·돈위생관리 요령(안)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21일부로 종계·돈장위생관리 요령(안)(위생51580-1354)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94년 1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수정, 보완을 거쳐 고시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것으로 되어있다.

### 종계장 위생관리 요령(안)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와 종계장의 위생관리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종계를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사의 환경위생관리) ① 종계를 사육하는 계사의 온도는 15°C~25°C, 습도는 60~70%로, 산소는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계사는 환기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 계사내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여도 탄산가스는 1%이하, 암모니아가스는 25ppm, 유화수소 40ppm이하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흡혈곤충이 매개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살충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계장은 계분 발효처리시설을 구비, 가동하여야 한다.  
⑤ 계군의 음수용 물(수도물이 아닐 경우)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종계장 소독등) ① 종계장은 적절한 소독약제와 기구로 주 1회이상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별표1의 양식에 의거 소독사항을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종돈장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 차량 및 기구등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계사의 출입구에는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 4 조(백신접종) ① 종계에 사용하는 백신은 수의사와 상의 또는 지시하에 시술토록 하여야 하며, 종계군별로 백신접종 사항을 3년간 별표2의 양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뉴캣슬병, 전염성후두기관염, 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F낭염, 마렉병, 계두, 닭뇌척수염, 산란저하증의 백신접종은 별표3의 백신접종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접종하여야 한다. 다만, SPF농장은 예외로 한다.

제 5 조(내·외부 기생충 구충등) ① 내부, 외부기생충이 감염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약제로 정기적으로 구충을 실시하고 구충제 사용기록을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사내외에 쥐의 서식 및 출입이 없어야 하며, 구서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충제 또는 구서제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수의사와 상의 또는 지시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종계입식, 출하 및 질병검색) ① 외부로부터 입식하고자 하는 종계는 제 4 조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계군에서 생산된 종계를 입주하여야 하며 성계를 입식할 때는 입식전 3주일 이상 격리 사육하면서 제 3 항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제 4 항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하여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계군에 한하여 입식하여야 한다.

② 종계의 입식 및 출하는 가능한한 동시입식, 동시출하 하는 것이 위생관리에 바람직하며 적어도 계사단위로는 동시입식, 동시출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상검사는 뉴캣슬병, 전염성기관지염, 산란저하증, 전염성F낭병, 계두, 마렉병, 닭뇌척수염, 살모넬라 감염증(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파라티푸스), 전염성 코라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실험실검사대상 질병과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뉴캣슬병, 전염성 코라이자 : 혈구응집 억제반응

2. 전염성 기관지염 : 한천 겔 침강반응 혈구응집억제반응 병행

3. 추백리 : 추백리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부 고시84-12호)에 의한다.

⑤ 검사기과은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현지 확인기관은 가축위생시험소로 한다.

제 7 조(종계의 정기검사) 종계 및 후보종계는 뉴캣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F낭병, 닭뇌척수염, 산란저하증,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 감염증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3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계군별 검사성적을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추백리의 경우 방역실시요령에 의한다.

제 8 조(종계의 전염병 관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종계장은 당해 질병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사실증명서가 있어야만 이동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제 9 조(종계의 인공수정)

① 인공수정사의 출입에 의한 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하여 가능하면 전속 인공수정사를 두도록 한다.

② 정액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모든 수정기구는 소독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검사) ① 가축위생시험소장은 매분기 1회이상 제 3 조 내지 제 7 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 1 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종계장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등록기관은 통보된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종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 6 조에 규정한 질병중 난계대질병은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별칙적용) 도지사는 종계업자가 이 요령

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기피·거부 및 방해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국립동물검역소

###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고시

국립동물검소는 지난 13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 지정 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 51584-781)”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을 개정고시 했다. 특히 양계의 경우 초생 추를 수입하는자는 제17조 2항에 의거 해당 검역장소를 수입30일전에 초생추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소장에게 신고 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SPF종란도 제11조 제1항에 의거 대상검역물에 포함되어 있다.

**표1.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병명	검사방법
우역~닭 전염성후두	현행과 같음
기관염	
부저병	세균검사 홀스트씨 우유시험
가성피저~소백혈병	현행과 같음
돼지번식 장애 및	혈청학적 검사
호흡기 증후군(PRRS)	바이러스 분리

**표2. 돼지, 말 정밀검사 대상질병 및 검사방법**

동물별	검사병명	검사방법
돼지	1~2	현행과 같음
	3. 돼지 번식장애 및 호흡기증후군(PRRS)	혈청학적 검사법 바이러스 분리
	4~5	현행과 같음
말	1~2	현행과 같음
	3. 바이러스성 동맥염	중화시험 또는 기타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 분리
	4~6	현행과 같음

**표3. 소, 돼지, 닭 식육의 특징**

종류	육질	지방
소	선적갈색, 오래된 것은 표면이 암갈색으로 됨.	엷은 황백색, 육간에 상강상으로 되어 있음.
돼지	연분홍백 또는 얇은 회백색 다른 육류에 비해서 유연	백색, 단면은 반짝반짝 지방광택이 있음.
닭	백색근과 적색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황색으로 소량임.

###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 비상대책회의 개최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전국농민대책회의가 주관한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 개방저지 범국민 비상대책회의”가 지난 8월 프레스센타에서 개최했다.

김성훈 집행위원장은 위기상황의 우리농업을 지키는 일은 이제 농민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적 과제이며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을 수입 개방문제는 우리농업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인 쌀을 지키느냐의 여부는 곧 농업의 존폐여부를 판가름 짓는 국가적인 대사라고 강조했



다.

이날행사는 쌀·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정경과보고에 이어 기자회견문,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김영삼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낭독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참석자는 정치계를 비롯 정당대표, 행정책임자, 소비자, 종교계, 시민단체, 농민단체,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하였고, 본회에서는 최준구 회장이 참석하였다.

###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제3회 육류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워크샵 개최



육류수출의 중대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2일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사 주최로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공동주제 발표에서는 육류수출 활성화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김강식회장이 발제강연을 하였으며, 주제발표에는 △육류수출 활성화를 위한 축산단체의 역할(박영인회장) △도축위생과 유해잔류물질 해결방안(김옥경소장) △육류수출 활성화에 따른 관련산업 발전 전망(이한기부장) △돈육수출의 현장에서 본 우리 축산업(김안규상무)로 진행되었으며 축종별 발표에는 하림식품 김홍국대표가 닭고기 대일수출 가능성과 해결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고 영육농산, 나주식품, 체리브로에서 토론자가 나와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경쟁력제고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본문 83페이지 참조)

### 제3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개최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정장섭)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부, 농협, 축협, KBS, 농촌진흥청, 건국대,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 제34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가 지난 17부터 18까

지 양일간 걸쳐 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술자 대회 제1부에서는 개회선언, 심사보고, 시상식, 선언문 및 건의문 채택, 대회장인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부에서는 흥사단공의회 서영훈 회장이 “무엇을 어떻게 개혁 할것인가?”에 대해 명사초청특강이 있었으며 제3부에서는 30주년 기념축제, 제4부에서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개혁방안”에 대한 농정대토론이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최준구 회장이 참석하였다.

## '94년7월부터 수의사 동물약품 판매 허용키로

수의사들의 숙원사업인 수의사 동물약품판매권 여부가 보장된 개정약사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4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된 약사법중 수의사의 동물약품판매권부여는 법 제72조의 6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동물병원개설자의 동물사육자에 대한 동물약품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국육류수출협회 사단법인 설립인가

한국육류수출협회(회장 김강식)가 지난 18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육류수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도축, 육가공, 사료생산 판매업체, 양축농가 및 양축법인을 회

원으로 △육류 수출·입 관련 국제시장 정보수립 분석과 제공 △국내 축산물의 대외홍보, 시장개척 △수출선의 검역제도와 대응 전략개발, 시책건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 보사부

### 외산농축산물 잔류 허용기준 강화키로

보사부는 UR협상타결에 따라 향후 수입농축산물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외산농축산물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1월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실충제인 BHC 등 16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95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칠면조 고기에만 설정돼있는 폐니실린 등 각종 항생물질 35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면양 및 산양고기, 말고기 등에도 확대적용 실시키로 했다.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키로 하고 현재 마련중인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확대 방안」을 늦어도 내년말부터 시행 할 계획인데 실시하게되면 현재 농약검사항목이 24종에서 58종으로 확대된다.

## 축산물공판장 9곳 건설키로

정부는 축산물공판장을 오는 '97년까지 9개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가축시장도 함께 정비하는 등 축산물 유통개선을 적극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축산물공판장건설

의 사업추진주체를 축협중앙회 지역 및 업종별 축협으로 하고, 도축, 경매, 냉장, 부분육가공 처리능력을 1일 소 1백두, 돼지 7백두 이상을 처리 할 수 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개소당 보조 50%, 융자 30%를 지원 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업신문사  
한국문학탐구대상수상**

한국농업신문사(발행인 박은기)의 이희석 주

필은 지난 20일 한국회관에서 한국문학탐구회가 제정한 제1회 한국문학탐구대상 시상식에서 평론부분 대상자로 선정됐다.

**축산시험장  
이근상 장장 정년퇴임**

축산시험장은 지난 28일 오후2시에 대강당에서 이근상 전 축산시험장장과 강태홍 전 제주시시험장장의 정년 퇴임식 및 황석중 초지조성 과장의 명예 퇴임식이 있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같이 일할 참신한 새 가족을 찾습니다.**

**경리직  
영업직**

- 인 원 : 약 간 명
- 근무처 : 서 울
- 자 격 : 경 리 직(고 졸 이 상)  
영 업 직(경험자우대)

**양지가축약품**

주 소 : 서울 강동구 길동 228-1  
전 화 : 478-2208, 1938